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의안번호	659
------	-----

제출년월일 2000. 11. 28.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폐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규칙을 입안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예고대상 및 미예고시 권고사항(안 제3조)
- 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등 예외사항(안 제4조)
- 다. 고성군 공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예고방법(안 제6조)
-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안 제7조)
- 마. 주민의 의견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조치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등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법제업무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나. 도법무12440-11292(2000. 10. 17)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치계획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고대상)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하는 경우에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세정제도
2. 보건·위생·환경
3.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4. 농지 기타 토지제도
5. 건축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사항의 확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 외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별지서식의 입법예고안 작성례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제5조의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 및 컴퓨터 통신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방법도 선택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관계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공청회 주재는 군수가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고, 주재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방청인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안 작성례

고성군공고 제 호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 이유

2. 주요골자

가. -----(안 제 조)

나. -----(안 제 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과장,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될 때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소 : ○○○○

다. 장소 : 공청사항

1)

2)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성군수(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군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